##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정보통신망침해등)·업

## 무방해·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1. 9. 2006고단1874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 신봉수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경원 담당 변호사 김재용 외 1인

## 【주문】

1

피고인 1, 2를 각 벌금 20,000,000원에, 피고인 3, 4를 각 벌금 7,000,000원에, 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
피고인 1, 2, 3,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 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, 2, 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.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[이유]

1